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견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9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의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이 상향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의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안 제53조).
- 나.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0.01퍼센트 포인트 인하함(안 제59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세율인하 권고안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세수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에서 전액보전 예정으로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